

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간제 근로자[영문에디터(통번역전문관)]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 산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탄녹위) 사무처 국제협력 담당관실에서는 기간제 근로자(영문에디터(통번역전문관)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5년 1월 16일

국무조정실장

1. 선발개요

채용분야	인원	주요 담당업무	근무예정부서
기간제근로자 [영문에디터 (통번역 전문관)]	1명	○양자면담·국제회의 등 영어 통번역 업무 ○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동향 자료 작성 ○탄녹위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○국제협력과 행정지원 업무 등	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사무처 국제협력과

2. 근무조건

- 계약기간 : 임용일('25. 2월중)로부터 6개월 * 예산상황에 따라 채용연장 가능
- 보 수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내부 운영지침에 따름
 - 2025년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
 - ※ (기본급) 월 300만원 내외
 - ※ (수당)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 등
 - ※ (보험)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
 - *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
- 근무지 : 세종특별자치시
-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, 점심시간 1시간 제외)
 - ※ 업무 특성상 기재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, 휴일근무 가능(수당 별도 지급)

3. 채용자격요건

① 공통요건(기준 :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)

- 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 제2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준용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(2007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)
 - *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
【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(가족 채용 제한)】

1. 소속 고위공직자
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3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4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② 응시자격요건(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)

- 영어 통·번역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(‘25.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)
 - * ‘25.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채용계약 전에 석사학위증 제출 필요(서류접수 시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)
- 영어권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 - *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학사과정 참여시 인정 (증빙서류 제출 필요)
- 통역 또는 번역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

③ 우대요건(서류접수 마감일 기준)

- 공인어학시험(TEPS, TOEIC, TOEFL, IELTS) 성적 우수자(점수별 차등우대)
 - *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,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성적만 인정
-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* 영문에디터 근무 경력자
(연차별 차등우대, 자격요건 상 필수경력 제외)
 - *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(alio.go.kr)에서 지정된 공공기관
- 기후환경 분야 업무 경력자(연차별 차등우대)

4. 시험방법

① 1차시험 : 서류심사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* 서류심사 평정요소 : 국·영문 자기소개서, 공인어학성적, 동종 분야 또는 기후환경 분야 근무경력 등
- 경력기간은 통상근로(전임근무)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(시간제 근무)의 경우 기준(주당 40시간 근무)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
 - ※ 단시간 근무(시간제 근무) 경력 산정 방법(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)
 - 전임 근무 : 경력의 전부 인정
 - 시간제 근무 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
 - * [예]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 -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: 경력기간 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

② 2차시험 : 면접시험(실기포함) 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 및 면접을 실시하여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※ (평정요소) ①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③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④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⑤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
- 평정요소 중 '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'의 경우 면접심사 당일 영어 통·번역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, 그 결과를 활용·참고하여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
 - ※ (최종합격자 결정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, "상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.

5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5.1.16(목)~'25.1.31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
원서접수	'25.1.16(목)~'25.1.31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제개발협력본부 채용담당자 (전자우편 2050cnc@korea.kr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5.2.4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'25.2.7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'25.2.14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6. 원서접수

- ① 접수기간 : '25.1.16.(목) ~ '25.1.31.(금) 18:00
- ② 접수방법 : 전자우편접수
- ③ 전자우편 : 2050cnc@korea.kr

※ 전자우편 접수는 **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**

7. 제출서류

- ① 국·영문 이력서 각 1부 : **【별지1호】** 국문 작성
 ※ 영문은 별도 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작성
- ② 국·영문 자기소개서 1부 : **【별지2호】** 국문 작성
 ※ 영문은 별도 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작성
- ③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 : **【별지3호】** 국문 작성 및 기관 발급 증명서 함께 제출
 ※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
 ※ 근무기간(연월일), 직위, 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(예: 주당 30시간) 등 반드시 기재

- ※ **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**(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)
- ※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권고
- ※ 재직증명서 제출 시,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

④ **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** (해당자에 한함)

- ※ 심사위원 제척·기피,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,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공개되지 않음
- ※ '25.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채용계약 전에 석사학위증 제출 필요(서류접수 시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) / 영어권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학사과정 참여시 인정 (증빙서류 제출 필요)

⑤ **주민등록 초본 1부** (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, 외국인 제출 불필요)

⑥ **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: 【별지 4호】**

⑦ **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: 【별지 5호】**

⑧ **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사본 각1부** (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, TOEIC, TEPS, IELTS 시험성적표 제출)(점수별 차등우대)

*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,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성적만 인정

※ **서류제출 주의사항**

- 가. 제출 서류 중 ①, ②, ⑥, ⑦번 서류의 경우, **반드시 서명하여** 제출
(전자메일로 서류 제출시 **반드시 서명된 컬러스캔파일** 형태로 제출)
- 나. 응시원서에 작성한 이력사항 중 ③~④ 및 ⑧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
- 다. **전자우편으로 원서 제출 시 번호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**

8. 유의사항

- 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②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
- ③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④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선발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근로계약 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⑥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, 신원조사 또는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⑦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⑧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공고 및 별도 안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⑩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⑪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통협력관 국제협력과(☎ 044-200-197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